

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0. 11. 21.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시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.
(안 제6조 제2항)

3. 수정 내용

- 조례안 제6조 (기금심의위원회) 내용 중
“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
“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로
수정함.

구미시식품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영업자"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2. "시설개선자금"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3. "대여"라 함은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

제3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
제4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3.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4. 식품위생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6. 기금의 관리, 운용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
7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

제5조 (기금의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
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

④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 (기금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**7인 이내의 위원**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식품위생담당국장

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 (위원회의 운영)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시설개선자금 융자

제9조 (융자사업) 시장은 구미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

제10조 (융자신청)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융자한도 및 상환조건)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 (융자금 대여)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

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 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와 다음회계연도 6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

수 정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 (기금심의위원회)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<u>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③ ~ ④ 생략	제6조 (기금심의위원회)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<u>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③ ~ ④ 제정안과 같음